

	수업관리 규정	문서번호		3-3-6	
				제정일	
				2010. 03. 01.	
				개정일	
				2022. 08. 31.	
				페이지	1/4
			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수업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내 수업운영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계획) 교무처는 학기 전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사일정) ① 교무처는 각 학년도 12월, 7월에 학기별 학사일정을 수립한다.

② 학사일정 수립 시 보강 주 1주를 사전 편성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학사일정 공지 및 변경) ① 학기 개시 전 교수회의, 게시판,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
② 학사일정은 교무위원회 회의, 교수회의를 통해 변경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강의시간) ① 강의는 09:00부터 22:3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② 강의시간의 단위는 주간 50분, 야간 45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온라인 수업은 50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동영상 강의는 최소 25분 이상을 해야 한다.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강의시간표편성)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3일 이상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보직교원과 비전임교원, 강사는 예외로 한다.

② 강의시간은 이론과목을 기준으로 전임교원은 연속강의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강의시간표 공고 및 변경) ① 강의시간표는 학기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강의시간의 휴강, 변경을 하는 경우 강의보강, 변경신청서를 사유발생일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	수업관리 규정	문서번호		3-3-6	
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개정일		2022. 08. 31.	
		페이지	2/4	관리 부서	교무처

제9조(강의 학생수) ① 이론과 교내실습을 포함한 모든 전공과목 수업은 강좌 당 50명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.

② 강좌의 구분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강의계획서) ① 교무처는 각 과목별 담당 교수에게 강의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담당 교수자는 강의계획서에 교과목 목표, 학습 성과 및 관련 학습목표, 15주 주차별 학습내용 및 교수방법, 출결 성적 및 성적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교무처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무처는 학기 개시 전 강의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교무처는 강의계획서를 점검하고 점검 시 작성이 누락된 경우, 담당 교수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한다.

제11조(출석부) ① 교무처는 각 학년도별 2월, 8월에 수강신청 결과를 반영한 출석 명단을 작성하고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한다.

② 강의담당교원은 전자출결시스템에서 학생의 출결사항을 기록, 관리한다.

제12조(사전 교육) 교무처는 각 학기 개시 전 수업운영 규정 및 지침 내용을 교수자,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전 신고) ① 교수나 강사는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본인의 자녀인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교무처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.

② ①항의 사항에 해당자는 타 교강사의 강의를 우선 수강하도록 하며 단일반의 경우에는 공정한 성적처리가 되었는지 성적사정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.

제14조(점검) ① 교무처는 학기 중 출석, 휴/보강 등 수업운영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한다.

② 교무처는 학기 말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한다.

③ 교무처는 학기 중 출석인정서를 점검 후 처리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한다.

	수업관리 규정	문서번호	3-3-6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4	관리 부서	교무처

④ 교무처는 학기 중 휴/보강 계획서를 점검 후 처리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한다.

제15조(성적) ① 교수자는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 평가를 하고 전산에 최종성적 입력한다.

제16조(평가) ① 교무처는 매 학년말 수업관리 결과에 대한 학사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.

제17조(원격수업)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6조 1항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수업관리 규정	문서번호	3-3-6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4/4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